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207)

◇ 제 · 개정 이유

최근 대구 서문시장(2016년) 및 여수 수산시장(2017년) 등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, 전통시장에 대한 인명·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안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새로운 소방시설의 종류인 ‘화재알림설비’로 추가되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전부 개정(공포 '22.11.29., 시행 '22.12.1)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화재알림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의 용어 정의를 마련함(안 제3조)
- 나. 신호전송방식(유선, 무선, 유·무선)에 대한 기준을 정함(안 제4조)
- 다. 소방용품(화재알림형 수신기, 화재알림형 중계기, 화재알림형 감지기,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)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을 정함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)
- 라. 비화재보방지를 위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 또는 화재알림형 감지기에 자동보정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(안 제8조)

마.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계인은 선택적으로 위탁관리업자의 원격감시서버를 이용한 소방시설의 원격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함(안 제10조)